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二段階쿼타配分制度의 經濟效果

朴 泰 鎬

대부분의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總쿼타의 일부를 開放쿼타로 할당하여 輸出單價와 非規制國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輸出所得과 輸出物量의 감소를 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政策的 努力으로 해석된다. 本稿는 部分均衡分析을 통해 非規制國 輸出實績을 開放쿼타의 配分基準으로 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單一쿼타配分制度보다 非規制國 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輸出所得의 변화는 非規制國의 輸入需要彈力성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非規制國 輸出價格을 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資源配分の 非效率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規定에 위배되는 덤핑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輸出쿼타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資源配分の 效率과 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I. 序 論

1940년대 이후 GATT는 여러 차례의 多者間貿易協商(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을 통해 關稅障壁(tariff barriers)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1973년에 시작

하여 1979년에 종결된 「도쿄라운드」 多者間貿易協商은 선진국들의 平均關稅率을 4~8% 수준으로 인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 주요 保護貿易手段으로 사용되어 왔던 關稅는 그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關稅障壁가 완화되자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이 선진국의 새로운 保護貿易手段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新保護主義

筆者：本院 研究委員

* 本稿는 世界銀行의 Senior Economist인 Jaime de Melo와의 共同研究에서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힌

다. 韓國經濟學會 定期學術大會(1988.2.9)에서 論評해 주신 梨花女大 安洪植 教授 그리고 本稿의 論評을 맡아 주신 金址鴻 博士와 慶熙大 張義泰 教授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new protectionism)는 開發國들의 對先進國 輸出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世界銀行의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83년 開發國들에 의한 對先進國輸出的 34% 이상이 非關稅障壁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非關稅障壁의 사용빈도와 규제범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非關稅障壁에 속하는 貿易規制의 형태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非關稅障壁의 대표적인 輸入規制形態로 등장한 것은 雙務協商(bilateral negotiation)을 통해 輸出國으로 하여금 輸出物量을 규제토록 하는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라 하겠다. 輸出自律規制는 특히 섬유, 의류, 신발, 철강 등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開發國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世界銀行의 同 報告書에 의하면, 1983년 開發國의 對先進國 工業品輸出的 12% 이상이 輸出自律規制에 의해 규제받았으며, 그 사용빈도 및 규제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輸出自律規制가 非關稅貿易障壁의 대표적인 輸入規制形態로 확산됨에 따라 輸出自律規制의 經濟效果, 制度 및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적인 측면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크

게 다음 세 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첫번째 연구분야는 輸出自律規制의 厚生分析(welfare analysis)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輸出自律規制協商을 주도한 輸入國 經濟에 미치는 厚生效果(welfare effect)를 분석하였으며, 관세를 통한 輸入制限보다 輸出自律規制에 의한 輸入制限이 더 큰 厚生費用(welfare cost)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

이러한 결론은 輸出物量의 規制로 인해 발생하는 地代(rent)가 輸出國으로 이전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輸出國으로의 地代移轉(rent transfer)을 輸入國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輸入쿼타競賣(auctioning of import quota)制度의 논의를 촉진시킨 바 있다³⁾.

두번째 연구분야는 輸出自律規制가 확산되는 근본적인 배경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輸出自律規制가 GATT體制 밖의 輸入規制形態인 동시에 物量規制에서 오는 地대가 수출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가 輸出自律規制를 선호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輸出自律規制 확산추세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輸出自律規制는 GATT條項 19條에 근거한 輸入規制措置와는 달리 最惠國(most favored nation)原則에 의한 對輸出國 補償의 부담을 주지 않으며, 雙務協商에 의해 신속히 취해질 수 있고, 또한 규제내용이나 효과 등이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입국들이 이를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다⁴⁾. 輸出自律規制의 擴散과 GATT내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와의 관계는 금번 「우루과이 라운드」多者間協商에서도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⁵⁾.

1) Nogues-Olechowski-Winters(1986) 參照.
 2) 이러한 結論을 내린 대표적인 研究報告書로는 신발수출의 VER을 다룬 Pearson(1983), VCR·자동차·신발수출의 VER을 다룬 Greenaway-Hindley(1985), 철강수출의 VER을 다룬 Tarr(1987) 등을 들 수 있다.
 3) 미국의 輸入쿼타競賣制度를 논의한 Bergsten-Elliott-Schott-Takacs(1987) 參照.
 4) 이와 같은 논의는 Bhagwati(1986)에 잘 정리되어 있다.
 5) Hindley(1987)는 GATT조항 19조에 근거한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條件과 義務 등을 완화할 경우 VER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세번째 연구분야는 輸出商品構成의 高價化 (export mix upgrading), 非規制國을 통한 迂迴輸出(transshipment), 非規制國에로의 直接投資 등 輸出自律規制實施國의 適應現象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輸出自律規制가 몇몇 輸出國의 輸出物量만을 규제하고 또한 規制對象品目を 세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또한 이러한 迂迴輸出과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수출은 輸入國이 輸出自律規制協定을 맺게 된 기본목적, 즉 國內産業保護를 위한 輸入制限의 효과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⁷⁾.

本 研究은 위의 세번째 연구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輸出自律規制를 위한 輸出쿼타配分時 基本쿼타(basic quota)와 開放쿼타(open quota)를 함께 배분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two-tier quota allocation system)에 대하여 그 도입동기와 배분방법, 후생효과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本 研究은 신발貿易에 대해 Hamilton(1986b)이 지적한 바 있는 소위 「도미노」(Domino)현상, 즉 한 수출국이 특정수입국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맺은 후 일부 다른 수입국들도 동일수출국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하게 되는 현상과 輸出自律規制의 확산과 더불어 덤핑提訴가 증가하

는 현상 등이 二段階쿼타配分制度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輸出自律規制時 韓國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설명하며, 특히 二段階쿼타配分制度에서 開放쿼타를 할당하는 근본동기와 그 배분기준을 概觀한다. 第III章에서는 輸出쿼타配分制度를 분석하기 위한 간단한 部分均衡模型을 먼저 소개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基本쿼타와 開放쿼타를 함께 배분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輸出自律規制를 이행함에 있어서 開放쿼타를 할당한 근본동기를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한다. 第IV章에서는 第III章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經濟效率의 側面에서 基本쿼타만을 배분하는 單一쿼타配分制度(single quota allocation system)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를 比較分析한다. 第V章에서는 輸出自律規制時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政策的 努力에 대한 政治經濟的인 동기를 究明하고, 또한 輸出自律規制의 확산과 더불어 덤핑提訴가 증가하는 현상이 二段階쿼타配分制度和 연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第VI章에서는 논문의 要約과 結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輸出自律規制와 쿼타配分制度

輸出自律規制는 수입국이 關稅 또는 輸入쿼타 등을 통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대신 雙務協定을 맺어 수출국으로 하여금 輸出物量을 규

이 開途國 立場에서 유리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VER規制를 현재 상태로 두고 오히려 GATT 조항 19조의 條件과 義務를 강화시키는 것이 開途國에 유리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6) 輸出商品構成의 高價化의 理論的 分析은 Falvey(1979), Rodriguez(1979), Chang(1984), Barkde Melo(1987)에 잘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實證分析은 신발輸出의 VER을 예로 한 Chang(1984)과 Aw-Roberts(1986), 鐵鋼輸出의 VER을 예로 한 Boorstein(1986), 자동차의 VER을 예로 한 Feenstra(1985)와 Crandall(1987) 등이 있다.

7) Baldwin(1982)은 신발과 纖維의 輸出에 대한 輸入規制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제하게 하는 輸入規制措置로서 다음 두 가지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輸出自律規制下에서의 첫번째 특징은 특정수입국으로의 輸出物量만을 규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특징은 規制對象品目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여러 품목의 輸出總量만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自國의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減少에 직면하게 되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export market diversification)와 規制國으로 수출하는 商品의 高價品化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게 된다.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이 輸出市場多邊化와 輸出商品의 高價品化를 위해 흔히 사용하고 있는 政策手段의 하나는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實績과 輸出商品의 平均單價 등을 고려하여 輸出쿼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輸出쿼타配分制度의 보다 구체적인 예는 韓國의 現行 쿼타配分制度에서 찾아볼 수 있다. 韓國의 輸出쿼타는 대부분 基本쿼타와 開放쿼타로 나누어지는 소위 二段階쿼타配分制度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雙務協定에 의해 결정된 規制對象品目の 輸出物량은 우선적으로 既存輸出業體들에게 前年度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와 같이 배정되는 쿼타가 基本쿼타이며, 이의 특징은 輸出自律規制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수출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既得權을 보호해 준다는 점이다. 한편 開放쿼타는 基本쿼타가 배정되고 난 잔여부분, 兩國間協定에 의한 輸出쿼타의 증가분, 그리고 基本쿼타의 未消費分 등으로 구성되며, 開放쿼타는 대부분 平均輸出單價와 非規制地域으로의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開放쿼타의 특징은 모든 輸出業體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는 점이며, 이는 既得權이 없는 신규 수출업체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 <表 1>은 韓國에서 輸出自律規制를 실시하고 있는 각 商品의 輸出組合別 쿼타配分方法을 정리한 것으로, 조합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쿼타配分原則을 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품의 가격이 輸出쿼타配分의 주요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음은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輸出所得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국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輸出自律規制 實施後 나타나는 輸出商品의 高價化現象을 잘 설명해 준다. 輸出쿼타配分制度和 輸出商品의 高價化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⁸⁾. 한편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實績이 開放쿼타配分의 주요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음은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最小化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적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實績을 配分基準으로 한 開放쿼타제의 도입이 資源配分 및 輸出所得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本稿의 주요 목적은 바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보강시키고 나아가 輸出쿼타配分制度를 정책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講究하는 데 있다.

8) 註 6 참조.

〈表 1〉 韓國의 輸出쿼타配分制度

品 目	輸 出 對 象 國	쿼 타 配 分 基 準	
		基 本 쿼 타	開 放 쿼 타
織 維	美國, 캐나다 EC,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前年度 輸出實績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L/C上的 輸出單價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前年度 非規制地域輸出實績
絹 織 物	日 本	前年度 輸出實績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綿 絲	日 本	前年度 輸出實績	L/C上的 輸出單價
運動用革靴	美 國	前年度 輸出實績	L/C上的 輸出單價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前年度 非規制地域輸出實績
신 발 類	英 國	前年度 輸出實績	L/C上的 輸出單價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金屬製洋食器	美國, 英國, 西獨, 베네룩스	前年度 輸出實績 前年度 輸出金額	基本쿼타 保有率 前年度 非規制地域輸出實績
黑 白 TV	英 國	前年度 輸出實績 前年度 輸出價格	基本쿼타 保有率 前年度 平均輸出單價 前年度 非規制地域輸出實績
普 通 鋼	美 國	前年度 輸出實績	新製品 輸出實績 小規模業體 및 新規業體 前年度 非規制地域輸出實績

註：基本쿼타와 開放쿼타의 相對的 比率은 品目別로 상이하며, 또한 協定에 의한 쿼타의 增加率과 消盡實績에 따라 매년 변경된다. 輸出組合의 1988년 자료에 따르면 開放쿼타의 比率이 신발의 경우 10%, 鐵鋼의 경우 9.5%, 纖維類의 경우 15%로 配分되어 있다.

資料：李性燮, 「輸出自律規制와 쿼타配分制度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 第 6 卷 第 3 號, 韓國開發研究院, 1984 年.

Ⅲ. 部分均衡模型下에서의 二段階 쿼타配分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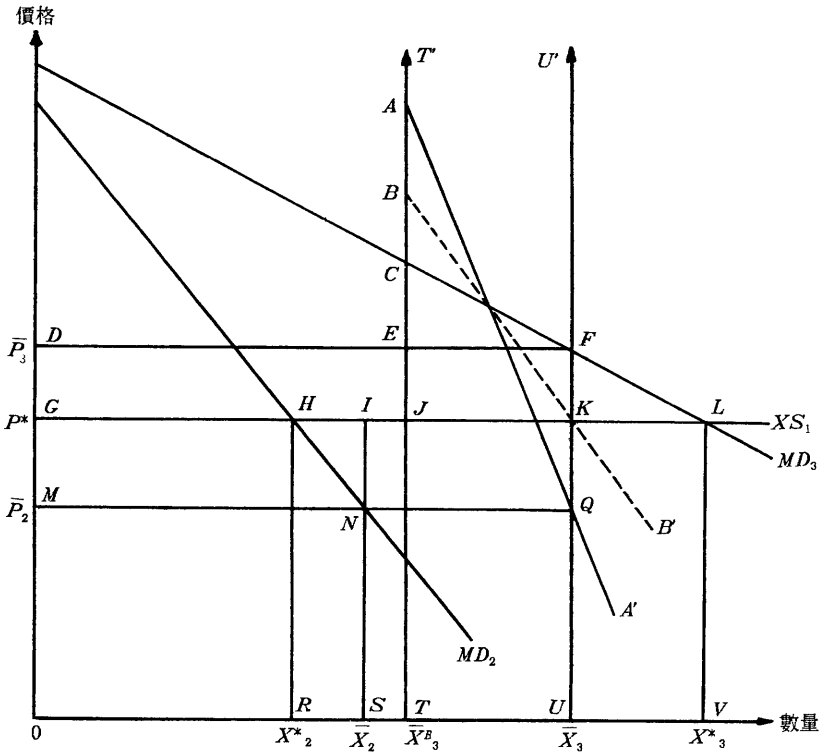
本章에서 소개된 모형은 輸出쿼타配分制度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部分均衡模型으로, 다음과 같은 基本假定下에 세워졌다.

(1) 財貨 X의 세계시장은 國內生産이 國內

需要를 초과하는 1개의 輸出國(國1)과 財貨 X를 수입하는 2개의 輸入國(國2, 國3)으로 구성된다. 또한 國1에서 생산되는 財貨 X는 國2와 國3에서 생산되는 X의 完全代替品이다.

(2) 國1에서의 財貨 X는 完全競争下에 다수의 同一企業(many identical firms)에 의해 생산되며,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된다(constant supply curve).

[圖 1] 二段階귀타配分制度의 部分均衡模型



XS_1 : 國1의 輸出供給曲線
 MD_2 : 國2의 輸入需要曲線
 MD_3 : 國3의 輸入需要曲線
 AA' : 基本귀타량과 式(4)에 따른 開放귀타량의 합을 표시함.
 BB' : 直線 AA' 과 輸入需要曲線 MD_3 가 나타내는 價格의 加重平均을 표시함.

(3) 國1은 높은 國際運送費用과 商品의 原產地表示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國際法에 의해 제3국을 통한 迂迴輸出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財貨 X의 輸出國을 國1로 국한시키고, 財貨 X의 生産供給曲線이 불변한다고 假定한 것은 분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假定들이 보다 현실에 맞게 완화된

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논의되며, 이 경우에도 本稿의 주요 分析結果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1]은 이러한 假定下에 財貨 X에 대한 國際市場의 部分均衡模型을 요약하고 있다.

[圖 1]에서 直線 XS_1 은 國1의 輸出供給曲線(export supply curve)이며, 直線 MD_2 와 直線 MD_3 는 각각 國2와 國3의 國1商品에 대한 輸入需要曲線(import demand curve)을 나타낸다⁹⁾.

따라서 自由貿易下에서 財貨 X에 대한 國

9) 輸出供給曲線은 國內供給曲線에서 國內需要曲線을 차감한 것이며, 輸入需要曲線은 國內需要曲線에서 國內供給曲線을 차감한 것이다.

際市場價格의 均衡水準은 P^* 가 되며, 이와 같은 均衡價格水準에서 國1은 X^*_2 를 國2로, X^*_3 를 國3으로 각각 수출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때에 國3內 生産業者들이 國內産業保護를 요구하여, 國1로 하여금 式(1)과 같이 國3으로의 輸出을 제한하도록 하는 輸出自律規制協정이 國1과 國3 쌍방간에 맺어지게 되었다고 假定하자.

$$X_3 \leq \bar{X}_3 = \lambda \cdot X^*_3 \dots\dots\dots (1)$$

式(1)에서 X_3 은 輸出自律規制協정 이후 國3으로의 輸出量이고, \bar{X}_3 은 國3으로의 輸出限界量이며, λ 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常數이다. 즉, \bar{X}_3 은 自由貿易下에서의 交易量인 X^*_3 로부터 $(1-\lambda) \cdot 100\%$ 감소된 것이며, 國1은 國3으로의 輸出物量이 \bar{X}_3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한편 분석의 편의를 위해 國2는 自由貿易體制를 일단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國1政府는 輸出規制를 履行하기 위하여 式(2), (3)과 같이 總輸出쿼타를 基本쿼타와 開放쿼타로 나누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택하고, 基本쿼타는 國3으로의 輸出實績에, 開放쿼타는 非規制國인 國2로의 輸出實績에 각각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와 같이 開放쿼타를 할당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택하는 것은 非規制地域으로의 輸出市場多邊화를 촉진시켜 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하자.

$$X^0_3 \leq \bar{X}^0_3 = \alpha \cdot \bar{X}_3 = \alpha \cdot \lambda \cdot X^*_3 \dots\dots\dots (2)$$

$$X^B_3 \leq \bar{X}^B_3 = (1-\alpha) \cdot \bar{X}_3 = (1-\alpha) \cdot \lambda \cdot X^*_3 \dots\dots (3)$$

式(2), (3)에서 X^0_3 과 X^B_3 는 각각 開放쿼타와 基本쿼타量이고, \bar{X}^0_3 과 \bar{X}^B_3 는 각각 開放쿼타와 基本쿼타의 한계량을 나타내며, α 는 國1政府가 결정하는 政策變數로서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은 常數이다.

또한 國1政府는 式(4)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開放쿼타 配分原則을 마련하였다고 가정하자.

$$X^0_3 = k \cdot X_2 \dots\dots\dots (4)$$

式(4)에서 k 는 國1政府의 政策變數로서 0보다 큰 常數이다. 즉 非規制國인 國2로 한 단위의 財貨 X 를 수출한 기업에게 k 단위의 財貨 X 를 國3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開放쿼타의 명목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配分原則을 택하게 되는 根本動機는 앞에서 假定한 바와 같이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수출량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增加를 통해 최소화시키려는 데 있다. 한편 開放쿼타의 또 다른 配分基準으로 자주 사용되는 輸出單價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고려하지 않았다. 즉 規制對象品目を 單一品目으로 假定하여, 輸出商品構成의 高價品化現象은 本稿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國1의 企業들은 다음과 같은 利潤函數(profit function)를 갖게 된다.

$$\pi = P_1 \cdot x_1 + P_2 \cdot x_2 + P_3 \cdot x_3 - C[x_1 + x_2 + x_3] \dots (5)$$

式(5)에서 소문자 x 는 代表企業의 地域別 販賣量을 나타내고, P_1 과 x_1 는 각각 國1의 國內價格과 國內販賣量을 나타낸다. 그리고 $C[\cdot]$ 는 企業의 費用函數(cost function)이다. 式(5)에 $x_3 = x^B_3 + x^0_3$, 式(4)를 대입하면, 式(5)는 式(6)으로 바뀌게 된다.

$$\pi = P_1 \cdot x_1 + (P_2 + k \cdot P_3) \cdot x_2 + P_3 \cdot x_3^B - C[x_1 + (1+k) \cdot x_2 + x_3^B] \dots\dots\dots(6)$$

여기서 基本쿼타가 소진된 것으로 假定하면 각 기업의 經濟問題는 주어진 價格下에 式(6)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式(3)을 式(6)에 代入하면 式(6)을 극대화하는 均衡條件은 式(7.1), (7.2)로 정리될 수 있다.

$$P_1 = C'[x_1 + (1+k) \cdot x_2 + (1-a) \cdot \lambda \cdot x_3^*] \dots\dots\dots(7.1)$$

$$P_2 = (1+k) \cdot C'[x_1 + (1+k) \cdot x_2 + (1-a) \cdot \lambda \cdot x_3^*] - k \cdot P_3 \dots\dots\dots(7.2)$$

式(7.1), (7.2)에서 $C'[\cdot]$ 은 限界費用函數 (marginal cost function)이다. 따라서 輸出自律規制下에 均衡點을 얻으려면 均衡條件(7.1), (7.2)와 함께 쿼타配分條件인 式(1), (2), (3)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즉 基本쿼타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bar{X}_3^0 = k \cdot X_2 = \alpha \cdot \lambda \cdot X_3^*$ 가 충족되어야 總쿼타가 모두 소진되는 均衡點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의 均衡點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α 와 k 가 정책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α 와 k 는 서로 獨立的이 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¹⁰⁾.

式(7.1)은 均衡點에서 限界生産費用과 國內價格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며 式(7.2)는 式(8)과 같이 변형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C'[\cdot] = \frac{P_2 + kP_3}{1+k} \dots\dots\dots(8)$$

즉 式(8)에 따르면 財貨 X 의 $1/(1+k)$ 단

10) 즉 式(1), (2), (3), (4)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는 α 에 의존하게 된다.

위를 國2로 수출하면 $k/(1+k)$ 단위의 財貨 X 를 國3으로 追加輸出할 수 있으므로, 均衡點에서는 1단위를 생산하는 限界生産費用과 이를 수출하여 얻는 收益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式(8)의 右側項이 左側項보다 크게 나타나는 한 國2로의 수출을 증가시켜 國3으로 수출할 수 있는 開放쿼타를 얻어내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二段階쿼타配分制度의 均衡點은 [圖 1]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垂直線 UU' 은 輸出自律規制協定에서 결정된 總쿼타량 \bar{X}_3 을 표시하고(式(1) 參照), 垂直線 TT' 은 政策變數 α 에 의해 결정된 基本쿼타량 \bar{X}_3^B 를 표시한다(式(3) 參照).

또한 直線 AA' 은 基本쿼타량에다 式(4)에 따른 開放쿼타량을 더한 쿼타량을 나타내 준다. 즉 垂直線 TT' 과 直線 AA' 의 수평거리는 바로 式(4)가 표시하는 開放쿼타량이다. 따라서 直線 AA' 의 높이와 直線 MD_3 의 높이의 加重平均인 點線 BB' 은 바로 式(8)의 우측항을 표시한 것이며 直線 BB' 의 높이는 財貨 X 의 1단위 중 $1/(1+k)$ 단위는 國2로, $k/(1+k)$ 단위는 國3으로 수출되어 얻는 收益을 나타낸다. 따라서 總쿼타가 소진되고 式(8)의 均衡條件이 충족되는 最終均衡點은 點線 BB' 과 輸出供給曲線인 直線 XS_1 그리고 垂直線 UU' 이 모두 함께 교차되는 點 K 에서 결정된다. 國1은 이러한 均衡點을 산출케 하는 \bar{X}_2 를 國2로 수출하게 되며 그 가격은 \bar{P}_2 가 된다. 또한 國3으로의 수출은 \bar{X}_3 이고 輸出價格은 輸出物量의 制限으로 인해 \bar{P}_3 으로 상승된다.

만약 國1政府가 基本쿼타만을 통해 全體쿼타를 배분하는 單一쿼타配分制度를 택하였다면, 國2로의 수출은 自由貿易下의 수준인 X_2^*

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開放쿼타를 할당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非規制國으로의 수출을 $\bar{X}_2 - X^*_2$ 만큼 증가시켜 輸出市場多邊化의 목적을 일부 달성시켰다 할 수 있다.

이제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에서의 輸出所得效果를 검토해 보자. 輸出所得의 변화는 輸入需要의 彈力度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輸入需要의 彈力度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輸出自律規制의 輸出所得效果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自由貿易下에서의 財貨 X 에 대한 輸入(圖 1의 點 L 과 點 H)이 모두 輸入需要曲線의 탄력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假定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輸出自律規制는 國3으로부터 오는 輸出所得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價格上昇에서 발생하는 地代利潤(사각형 $DGKF$)이 輸出物量減少에서 오는 損失(사각형 $KUVL$)보다 작기 때문이다. 한편 國2로부터 오는 輸出所得의 크기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에서의 均衡點(點 N)이 輸入需要曲線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點 N 이 輸入需要曲線의 탄력적인 부분에 계속 머물게 되면 非規制國인 國2로부터 오는 輸出所得은 증가하게 되나 點 N 이 비탄력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면 輸出所得은 감소할 수 있다. 後者の 경우는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오히려 輸出所得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非規制國市場으로의 수출량이 規制國市場으로의 輸出量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여건에서, 輸出自律規制實施國의 輸出商品에 대한 非規制國의 輸入需要彈力度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輸出所得減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IV. 二段階쿼타配分制度의 經濟效率分析

本章에서는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하여 취해진 二段階쿼타配分制度의 經濟效率 側面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開放쿼타를 할당하지 않고 基本쿼타만으로 總쿼타를 배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國1은 國3으로의 輸出價格上昇(P^* 에서 \bar{P}_3)으로 사각형 $DGKF$ 크기의 地代利潤을 얻게 된다. 이때 生産減少로 풀려나온 사각형 $KUVL$ 크기의 資源은 國1經濟의 다른 분야에 의해 재고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經濟效率의 손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國2로의 輸出物量과 價格이 변하지 않으므로 單一쿼타配分制度의 純經濟厚生效果는 사각형 $DGKF$ 크기의 地代利潤이라 할 수 있다. 輸出自律規制의 특징 중의 하나인 輸出國으로의 地代移轉(rent transfer)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에서의 經濟效率 側面을 보면, 國1은 역시 규제국으로의 輸出價格上昇으로 인한 地代利潤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開放쿼타의 할당과 그 配分原則은 非規制國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X^*_2 에서 \bar{X}_2 로) 반면 輸出價格은 限界生産費用보다 낮은 수준으로(P^* 에서 \bar{P}_2 로) 감소시켜 사각형 $GMNI$ 크기의 資源配分の 낭비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經濟損失은 地代가 있는 規制市場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하여 기업들이 경쟁적으

로 非規制市場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輸出價格이 限界生産費用 以下の 수준으로 하락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國1에 미치는 經濟效率側面에서 볼 때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單一쿼타配分制度보다 열등한 쿼타配分制度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地代利潤과 經濟損失을 동시에 고려하여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國1에 미치는 純經濟厚生效果(net welfare effect)를 분석해 보자. 먼저 開放쿼타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진 地代利潤(사각형 *EJKF*)과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增加로 인해 발생한 經濟損失(사각형 *GMNI*)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式(9)와 式(10)은 각각 사각형 *EJKF*와 사각형 *GMNI*의 크기를 式으로 나타낸 것이다.

$$EJKF = (\bar{P}_3 - P^*) \cdot (\bar{X}_3 - \bar{X}_3^0) \\ = (\bar{P}_3 - P^*) \cdot \bar{X}_3^0 \dots\dots\dots (9)$$

$$GMNI = (P^* - \bar{P}_2) \cdot \bar{X}_2 \dots\dots\dots (10)$$

式(4)를 式(9)에 代入하고 式(9)에서 式(10)을 빼면 式(11)을 얻게 된다.

$$EJKF - GMNI = [\bar{P}_2 - (1+k) \cdot P^* \\ + k \cdot \bar{P}_3] \cdot \bar{X}_2 \dots\dots\dots (11)$$

自由貿易下の 國際市場價格 P^* 는 限界生産費用인 $C'[\cdot]$ 과 같으므로, P_2 , P_3 , $C'[\cdot]$ 간의 균형조건인 式(7.2)를 이용하면 式(11)의 값은 0이 되며, 이는 開放쿼타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어진 地代利潤과 이를 얻기 위해 발생한 經濟損失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어진 條件下에서 기업의 利潤極大化行爲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이는 競爭的 地代利潤追求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rueger(1974)에 의해 처음 연구 소개되어 Bhagwati-Srinivasan(1980)에 의해 體系化된 利潤追求(rent-seeking)理論이 지적한 바와 그 脈絡이 같다고 하겠다. 또한 本章에서 분석된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정부가 특정시장으로의 판매에 補助金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른 시장으로의 판매에 稅金을 부과하여 補助金資金を 조달하는 소위 補助金支給 및 課稅政策(subsidy cum tax policy)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각형 *EJKF*와 사각형 *GMNI*의 크기가 같으므로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에서의 純地代利潤은 國1이 누릴 수 있는 全體 地代利潤(사각형 *DGKF*)으로부터 $\alpha \cdot 100\%$ 줄어든 사각형 *DGJE*로 표시된다(全體쿼타에서 開放쿼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α 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輸出市場多邊化와 쿼타配分制度의 效率性間에는 명확한 Trade-Off 관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圖 1]에 요약된 部分均衡模型은 輸出自律規制와 그에 따른 二段階쿼타配分制度下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국제무역의 均衡點이 國2와 國3의 經濟厚生에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먼저 國1의 輸出自律規制는 國3內 輸入財貨 X 의 國內價格을 P^* 로부터 \bar{P}_3 으로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價格上昇은 國3의 生産者剩餘(producers' surplus)를 증가시키는 반면 消費者剩餘(consumers' surplus)를 감소시키며, 이 경우 消費者剩餘의 減少가 生産者剩餘의 增加를 초과하여 國3은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純經濟厚生의 損失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純經濟厚生의 損失의 크기는 [圖 1]에서 사다리꼴

*DGLF*로 표시된다. 한편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非規制國인 國2內 輸入財貨 X 의 國內價格을 P' 에서 \bar{P}_2 로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격인하는 國2의 生産者剩餘를 감소시키는 반면 消費者剩餘를 증가시키며 이 경우 消費者剩餘의 增加가 生産者剩餘의 損失을 능가하여 國2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로 인해 純經濟厚生의 利得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純經濟厚生의 利得의 크기는 [圖 1]에서 사다리꼴 *GMNH*로 표시된다.

이제 세 나라에 미친 經濟厚生效果를 함께 관찰해 보자. 國1이 획득한 地代利潤(사각형 *DGKF*)은 國3의 消費者에 의해 지불된 것이고, 國2가 얻은 消費者剩餘의 增加(사다리꼴 *GMNH*)는 國1의 資源에 의해 충당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나라의 經濟厚生을 모두 합친 世界經濟厚生의 관점에서 볼 때 輸出自律規制와 이에 따른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결국 각각 삼각형 *FKL*과 삼각형 *HNI*로 표시되는 회복할 수 없는 經濟厚生의 損失(Dead-weight loss)을 초래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國1經濟뿐 아니라 世界經濟에도 추가적인 經濟厚生의 損失을 가져다 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輸出供給曲線이 생산량의 增加函數임을 가정하고 이와 같은 輸出供給曲線에 관한 가정의 완화가 本章의 주요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輸出供給曲線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게 되면, 輸出自律規制時 채택되는 쿼타配分制度의 형태에 따라 國1內 財貨의 國內價格이 변화하게 된다(式(7.1) 参照). 따라서 이는 [圖 1]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國1의 消費者에 대한 經濟厚

生效果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먼저 單一쿼타配分制度가 채택되는 경우를 보자.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國3으로의 輸出物量이 감소하면 國1內 財貨 X 의 생산량은 감소되며 이는 財貨 X 의 限界生産費用을 인하시키게 된다. 限界生産費用의 인하는 곧 國內價格의 인하는 의미하므로 國1의 消費者剩餘는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國3으로의 輸出價格이 限界生産費用보다 높아지므로 地代利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해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취해지면 非規制國인 國2로의 수출이 증가되므로 國1內 財貨 X 의 생산량이 單一쿼타制度下에서의 수준보다 높아지므로 이는 財貨 X 의 限界生産費用을 상승시키게 된다. 限界生産費用의 상승은 곧 국내가격의 인상을 의미하므로 國1의 消費者剩餘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限界生産費用의 상승은 國3으로의 수출에서 오는 地代利潤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때 國2로의 輸出價格이 限界生産費用보다 낮게 되어 資源配分の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假定下에서의 분석 결과는 國1의 消費者와 國3으로의 수출에서 오는 地代利潤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既存 分析結果와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추가적인 經濟厚生費用을 초래한다는 基本結論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V.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의 政治經濟學的 動機

前章에서는 輸出自律規制時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經濟厚生의 損失을 수반함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厚生의 損失에도 불구하고 韓國을 비롯한 여러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의 일환으로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輸出自律規制時 經濟의 效率性보다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정책적으로 중요시하는 현실적인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다.

즉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일반적으로 外貨保有量이 부족한 開途國들이므로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輸出物량과 輸出所得의 감소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先進國의 輸入規制에 직면하게 되는 開途國들은 輸出物량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최소화함을 主要經濟政策目標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第Ⅱ章에서 본 바와 같이 輸出自律規制協定下에서는 特定輸入國으로의 수출만을 규제하면 되므로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이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통해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本章에서는 輸出自律規制時 輸出市場多邊화가 정책적으로 중요시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동기로 최근 Hamilton(1986b)과 Yoffie(1983)가 輸出自律規制의 政治經濟的 特徵으로 지적한 바 있는 「도미노」(Domino)現象과 연결시켜 찾아보고자 한다. 「도미노」現象은 特定輸入國이 한 輸出國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한 후 非規制國이었던 輸入國들이 同一輸出國과 輸出自律規制協定을 맺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⁴ 非規制國이

輸出自律規制實施國으로부터의 輸入急증에 대해 自國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도미노」現象의 대표적인 예는 신발輸出에 대한 先進國의 輸入規制에서 찾아볼 수 있다. 韓國과 臺灣의 신발輸出에 대한 先進國의 輸入規制를 1977년부터 정리한 <表 2>에 의하면 美國이 1977년 韓國과 臺灣을 상대로 輸出自律規制協定을 맺을 당시 非規制國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輸出自律規制, 또는 다른 형태의 輸入規制措置를 통해 韓國과 臺灣의 신발輸出을 규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미노」現象은 特定輸入國과 輸出自律規制를 맺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현재의 非規制國들도 곧 自國의 輸出을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한다. 輸出自律規制의 협정시 總쿼타의 크기가 그 당시의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미래의 輸出自律規制協定에서 보다 유리한 總쿼타를 획득하기 위한 早期對備策으로 현재의 非規制國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經濟效率의 損失에도 불구하고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통해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생기게 될 輸出物량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적게 하려는 政策的 努力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미노」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주요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는 그 자체가 오히려 「도미노」現象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도미노」現象은 서로를 촉진시키는 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계는 輸出自律規制가 지니는 고유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輸出自律規制는 자신의 확산을 스스로 조장시키는 메카니즘을

〈表 2〉 韓國과 臺灣의 신발類에 대한 先進國輸入規制

韓 國			臺 灣		
規 制 國	規 制 形 態	規 制 期 間	規 制 國	規 制 形 態	規 制 期 間
美 國	V E R	1977~81	美 國	V E R	1977~81
E C	事後輸入監視制	1978	E C	事後輸入監視制	1978
英 國	V E R	1978~現在	이탈리아	政府間 協定	1981~現在
아일랜드	V E R	1979~85	프랑스	V E R	1981~82
노르웨이	政府間 協定	1979~85	아일랜드	域內監視制	1982~現在
이탈리아	N T B	1981~現在	英 國	V E R	1982~83
E C	V E R	1982~現在	그리스	Quota制	1983~84
핀란드	N T B	1983~現在	노르웨이	Licence制	1984~現在

資料 : Hamilton(1986b).

韓國貿易協會, 『主要先進國의 輸入規制總覽』, 各號.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최근 GATT體制 밖의 대표적인 灰色措置(grey area measure)로 간주되는 輸出自律規制는 이러한 메카니즘에 힘입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輸出自律規制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보다 제한적이고 관리적인 형태로 만들고 있다.

끝으로 한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도미노」現象을 유도할 뿐 아니라 輸出價格을 限界生産費用 이하로 낮춤으로써 GATT規則에 위배되는 덤핑事例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VI. 要約 및 結論

韓國을 비롯한 많은 開途國들은 輸出自律規制를 실시함에 있어서 輸出쿼타의 일부를 開放쿼타로 할당하여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二段階쿼타配分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쿼타配分制度는 근본적으로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줄이기 위한 政策的 努力的 일환이다. 本稿에서는 간단한 部分均衡模型을 이용하여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二段階쿼타配分制度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를 검토함과 동시에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의 經濟效率를 분석하였다. 本稿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二段階쿼타配分制度는 非規制國으로의 輸出物量을 증가시킨다. 이는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地代가 생긴 規制市場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非規制國으로의 수출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킨 데서 기인한다.
- (2) 非規制國으로의 輸出物量 增加에 따른 輸出所得의 변화는 非規制國의 輸入需要彈力度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증가된 輸出物量이 非規制國의 輸入需要曲線의 彈力的인 부분에 계속 머물 경우 非

規制國으로의 輸出所得은 증가할 것이다.

- (3) 規制市場의 地代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쟁적 행위는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價格을 限界生産費用 以下の 수준으로 하락시켜 資源配分에 있어서 經濟效率의 損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Krueger (1974)와 Bhagwati-Srinivasan(1980)이 지적한 바 있는 地代利潤의 追求로부터 오는 資源의 浪費와 같은 개념의 것이다.
- (4) 經濟效率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은 輸出自律規制 당시의 규제뿐 아니라 Hamilton(1986b)과 Yoffie(1983)가 지적한 바 있는 「도미노」現象에 의한 미래의 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감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어떠한 동기에서든 인위적인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은 오히려 「도미노」現象을 촉진시키게 되며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價格을 限界生産費用 以下로 인하시켜 GATT規則에 위배되는 덤핑事例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經濟效率의 損失을 초래하며 國際貿易環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輸出自律規制實施國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것은 國際收支의 赤字 등으로 인해 外貨保有量이 부족한 대부분의 開途國이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증대를 경제발전을 위한 主要經濟政策目標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물론 國際收支赤字國의 換率이 적정수준에 도달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資源配分面에서 經濟效率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生産補助金政策이나 효율적인 換率政策이 輸出市場多邊化政策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되므로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經濟效率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도미노」現象을 근거로 한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은 貿易環境의 변화로 인한 미래의 규제에서 오는 經濟效率의 감소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오히려 덤핑事例나 다른 輸出自律規制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미래의 經濟效率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론은 非規制國으로의 輸出實績을 開放취타의 主要配分基準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韓國의 現行 輸出취타配分制度가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非規制國에 의한 덤핑調査나 輸出自律規制壓力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韓國의 國際收支가 黑字로 전환되었음을 고려할 때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극대화보다는 資源配分の 效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輸出취타配分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資源配分の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서는 李性燮(1984)과 Hamilton(1986a)이 제안한 바 있는 輸出취타의 讓受渡許容 또는 輸出취타의 競賣制度 導入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동시에 本稿에서 본 開放취타制度의 운용 또한 적절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開放취타制度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취타配分基準

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즉 輸出物量과 輸出所得의 극대화보다는 高附加價值商品 輸出의 촉진, 技術開發投資企業의 우대, 보다 효율적인 新設企業 및 中小企業의 수출참여 확대 등에 分配基準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쿼타配分基準의 조정과 함께 總쿼타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稿에서의 분석 및 결론은 輸出市場多邊化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이 결코 아님을 밝혀둔다. 특히 韓國에서와 같이

수출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경우 輸出市場多邊化의 필요성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本稿는 다만 인위적인 輸出市場多邊化政策이 資源配分の 歪曲을 초래하고 國際貿易環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輸出節次的 簡素化, 未開拓市場의 需要와 流通構造에 대한 정보제공, 未開拓市場으로의 運送手段開發 등의 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李性燮, 「輸出自律規制와 쿼타配分制度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 第 6 卷 第 3 號, 韓國開發研究院, 1984 가을.

韓國貿易協會, 『主要先進國의 輸入規制總覽』, 各號.

Aw, Bee Y. and Mark J. Roberts, "Measuring Quality Change in Quota-Constrained Markets: The Case of U.S. Footwear,"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21, 1986, pp.45~60.

Baldwin, Robert E., *The Inefficiency of Trade Policy*, Frank D. Graham Lecture,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150, Princeton University, 1982.

Bark, Taeho and Jaime de Melo, "Export Mix Adjustment to the Imposition of VERs: Alternative License Allocation Schem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3, 1987, pp.668~678.

Bergsten, C. Fred and Kimberly A. Elliott, Jeffrey J. Schott, Wendy E. Takacs, *Auction Quotas and United States Trade Policy*,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7.

Bhagwati, Jadish N., "VERs, Quid Pro Quo DFIs and VIEs: Political Economy-Theoretic Analyse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1, No.1, 1986, pp.1~14.

_____, and T. N. Srinivasan, "Revenue-Seeking: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of Tariff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0, pp.1067~1087.

Boorstein, Randi, "Quality Upgrading in the Steel Industry: The Case of the 1968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mimeo), Columbia University, 1986.

Chang, Eui T., *The Effects of Quantitative Controls on Imports of Footwear from Korea and*

- Taiwa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84.
- Crandall, Robert W., "The Effects of U.S. Trade Protection for Autos and Steel,"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7, pp.217~288.
- Falvey, Rodney E., "The Comparison of Trade within Import-Restricted Catego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79, pp.1142~1165.
- Feenstra, Robert C., "Quality Change under Trade Restraints: Theory and Evidence from Japanese Autos,"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985.
- Greenaway, David and Brian Hindley, *What Britain Pays fo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Thames Essay No. 45, London: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5.
- Hamilton, Carl, "ASEAN Systems for Allocation of Export Licenses under VERs," in C. Findlay and R. Garnaut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Manufacturing Protection: Experiences of ASEAN and Australia*, Allen and Unwin, 1986a, pp.235~247.
- _____, "The Rise and Fall of Footwear Protectionisms," (mimeo),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86b.
- Hindley, Brian, "GATT Safeguard and Voluntary Export Restraints: What are the Interest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 No.4, 1987, pp.689~705.
- Krueger, Anne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74, pp.291~303.
- McCulloch, Rachel and Harry G. Johnson, "A Note on Proportionally Distributed Quot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3, No.4, 1973, pp.726~732.
- Nogues, Julio J., Andrzej Olechowski, and L. Allan Winters,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mport of 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789, 1986.
- Pearson, Charles, *Emergency Protection in the Footwear Industry*, Thames Essay No.36, London: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1983.
- Rodriguez, Carlos A., "The Quality of Imports and the Differential Welfare Effects of Tariffs, Quotas, and Quality Controls as Protective Devic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979, pp.439~449.
- Tarr, David G., "Effects of Restraining Steel Expo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 No.3, 1987, pp.397~418.
- Yoffie, David B., *Power and Protection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